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도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2.

발 의 자 : 안도결 · 양부남 · 이언주
조계원 · 안호영 · 조인철
박지혜 · 정진욱 · 윤준병
황명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%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,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

그러나, 펜데믹 이후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, 생맥주를 주요 판매 장소인 호프 · 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

또한, 생맥주와 소비 장소, 음용 목적, 소비층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하이볼의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주세를 30% 경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됨

이에 생맥주의 주세 감면을 30%로 상향하고,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경쟁 품목과 조세 혜택 및 일몰기간을 일치시키고,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(안 제8조).

법률 제 호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“2026년”을 “2028년”으로, “80으로”를 “70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세율)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.	제8조(세율) ①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발효주류: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	2. ----- -----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맥주: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. 다만,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<u>2026년</u>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<u>80으로</u> 하며, 100원 미만은 버린다.	다.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<u>2028년</u> ----- ----- ----- <u>-70으로-</u> -----.
3.·4. (생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